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3. . .	
연월일	(제 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찰·관광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11조)
- 나.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별표 6)
-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규정(안 제38조부터 4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해당없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를 “(해양보호생물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6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 현황
2. 종별 개체수
3. 생태적 특성
4. 위협요인
5. 기타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 관련 관찰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절차)”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절차)”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를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대장”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액”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보전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보전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을 “해양생태계보전보전금 반환”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해양생태계보전보전금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서”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2023. 00. 00)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관찰이나 관광활동 관련 세부 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선박 등을 활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활동 기준 및 방법

1)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것

돌고래와의 거리	1,500 ~ 750 m	750 m ~ 300m	300 m ~ 50m
선박 속력	10 knot 이하 (18.52km/h)	5 knot 이하 (9.26km/h)	선박의 스크류 정지

- 2) 돌고래가 선수와 타기 등을 위해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단,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해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3)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다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 4)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하지 않을것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
- 5)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것
- 6) 관찰·관광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적용 대상 선박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선박
-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

[별지 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28조제3항·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계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	가산금	미 수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	[]재부과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생태계보전 협력금	[]재 부과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결정일자	[]수 납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
(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 사유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납부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납부 금액 및 일시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납부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위탁시행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위탁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해양보호생물 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6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 현황 2. 종별 개체수 3. 생태적 특성 4. 위협요인 5. 기타 해양보호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u><신설></u>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 관련 관찰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u>해양생태계보</u>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 -----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
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
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
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
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
하로 한다.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
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회 이하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
과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3회 이하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통지서는

전부담금을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

----- 통지해야 -----.

②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③----- 해양생
태계보전부담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
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
2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

④-----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기록·관리해
야 ----.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해양생
태계보전부담금-----

-----.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
청서-----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 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

②-----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 제출해야 -----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 첨부해야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 4. (생략)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 4. (생략)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 내줘야 ----.

③-----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 제출해야 -----
--.

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

2. ~ 4. (현행과 같음)

④-----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2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관찰이나 관광활동 관련 세부 기준(제21조의2 관련)

- 1)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 것

돌고래와의 거리	1,500 ~ 750 m	750 m ~ 300 m	300 m ~ 50 m
선박 속력	10knot 이하 (18.52km/h)	5knot 이하 (9.26km/h)	선박의 스크류 정지

- 2) 돌고래가 선수와 타기 등을 위해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떨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단,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해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3) 돌고래로부터 300 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다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 4) 돌고래 반경 50 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하지 않을 것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
- 5)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바다 표면에서 30 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6) 관찰·관광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적용 대상 선박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선박
-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연 락 처	(044) 200 - 5315